

# 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지수 비교를 통한 건설분야 산업재해 분석 및 저감대책

이규진\*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 A Comparison of Income Level and Work-Related Fatalities for Finding Causes and Measures for Construction Sector

Yi, Kyoo-Jin\*

\*Department of Civil, Safety,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As the income level of a country gets improved, people'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xpectation will grow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income level of Korea has been remarkably improved, her work-related fatality rate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Moreover, the rate hasn't been reduced for more than 10 year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ppropriate measures for work-related fatality reduction by comparing the income levels and the work-related fatality rates of countries and by analysing the problems of our worker-oriented accident prevention policy. For the comparison of income level and work-related fatalities, this study suggests income-level incorporated fatality rate, and it turned out that the rate of Korea is the highest among the countries. In order to find out the causes of that result, this study has found that our law enforcement is much weaker than that of UK, which implicates more strict law enforcement policy is needed to improve our work-related safety.

**Keywords :** Construction Safety, Work-related Fatality R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득수준이 높으면 이와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기대수준도 함께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업안전에 대한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Purchasing Power Parity) 일인당 GDP는 \$31,753로 185개국 중 27위이며 선진 34개국 중 22위이다. 이는 EU 평균 \$31,673과 유사한 수준으로 스페인 \$30,478, 이탈리아 \$30,464보다 높으며, 영국(\$35,974)이나 일본(\$34,362)과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

준이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영국이나 스위스의 산재사망률은 각각 우리의 1/10 이하 수준에 불과하며, 심지어는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멕시코조차도 산재사망률이 우리의 절반이하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수준이 소득수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는 산재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소득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며,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률을 관련 국가들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근로자 중심의 산재예방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한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 정책의 방향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된 "산업재해현황분석"과 영국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 Corresponding author: Yi, Kyoo-Jin, Department of Civil, Safety,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Kyeonggi 456-749, Korea  
E-mail: helden@hknu.ac.kr  
Received August 6, 2013; revised August 26, 2013  
accepted May 20, 2014

사고발생과 규정미준수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동향보고와 산업재해현황분석보고 등을 통해 건설업분야 안전시설 등 관련규정준수여부와 법집행수준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을 위한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OECD국가를 비교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중에서 가장 산업재해율이 낮은 영국의 사례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한다.

## 2. 산재영향요인 및 추세

기존연구에서는 건설공사에서도 재해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는 최상의 방법 중의 하나로 통계적 방법과 도구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시도가 있었다(Chua 2005). 산업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된 산업재해현황분석<sup>1)</sup>을 바탕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1년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2.1 산재사망 영향 요인(2011년)

산재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소득수준과 관계되는 “경제적 요인”과 법집행과 관계되는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1.1 기인물

산재사망의 기인물은 가설구조물이 절반이상(55%)을 차지하고 있다(Fig. 1). 가설구조물의 올바른 설치의 추락이나 낙하비래의 예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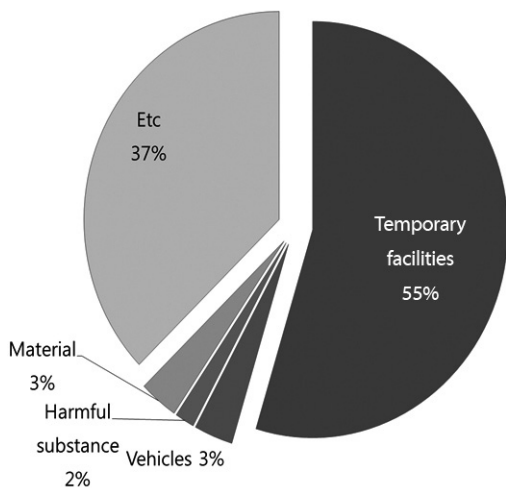


Fig. 1. Causes of worker fatalities (Korea 2011)

를 부실하게 설치했음은 곧 불안정한 상태를 방치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설구조물의 설치의 비용이 요구되므로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이를 올바로 설치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를 방치했다는 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요인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2.1.2 관리적 원인

산재사망의 관리적 원인은 절반이상인 작업관리상 원인(58%)이었으며 교육적 원인은 6%에 불과했다(Fig. 2). 즉 안전교육이 부족하여 사고가 난 경우보다 관리적, 기술적 원인이 월등히 많았음을 의미한다. 근로자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정책보다는 작업관리와 기술적 원인 개선에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적, 기술적 원인이 많다는 것은 이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물적 요인(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요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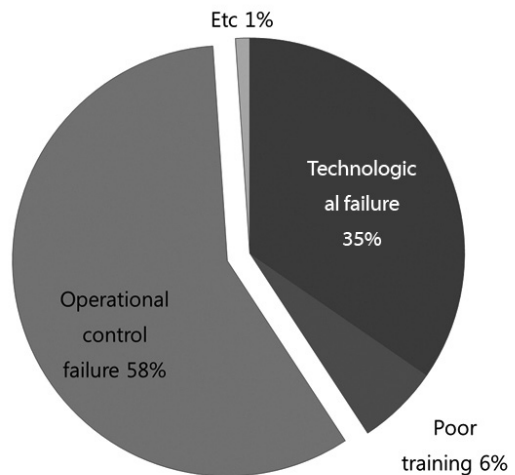


Fig. 2. Managerial causes of worker fatalities (Korea 2011)

#### 2.1.3 직접원인

2011년의 경우 산재사망의 원인은 안전방호장치결함(Fig. 3), 불안정한 상태의 방치(Fig. 4) 등 작업환경적 요인이 핵심을 차지했다. 반면 불안정한 자세동작 등 작업자 관련 요인은 6.2%에 불과했다. 즉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작업자 과실보다는 작업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했음을 의미하며, 사고의 원인에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조심을 강조하는 산재예방 대책은 실질적인 산재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1) <http://www.kosha.or.kr/board.do?menuId=554>

없으며, 근로자 중심의 안전교육은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유지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회적 요인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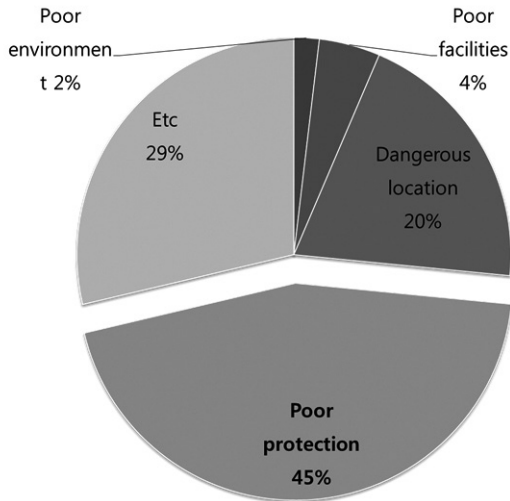


Fig. 3. Primary causes of worker fatalities (unsafe con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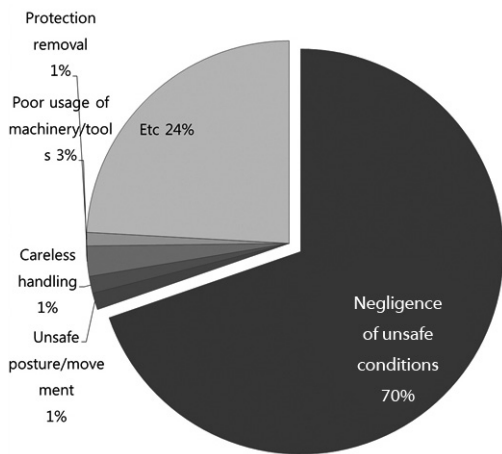


Fig. 4. Primary causes of worker fatalities (unsafe behaviour)

## 2.2 산재사망의 원인의 연도별 추세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Fig. 5에서 보듯이 근로자의 불안정한 자세동작으로 인한 산재사망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에는 전체 원인 중 16%를 불안정한 자세동작이 차지했지만, 2007년 이후에는 2%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사고비율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6과 Fig. 7에서 보듯이 안전방호장치의 결함, 불안정한 상태 방치 등 안전시설 및 환경관련요인으로 인한 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비율이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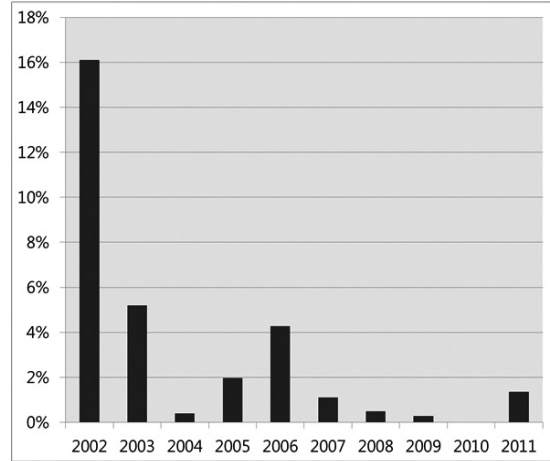


Fig. 5. Annual trend – unsafe posture/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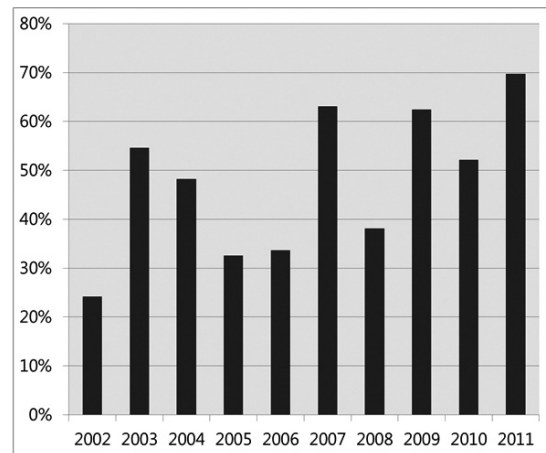


Fig. 6. Annual trend – negligence of unsafe con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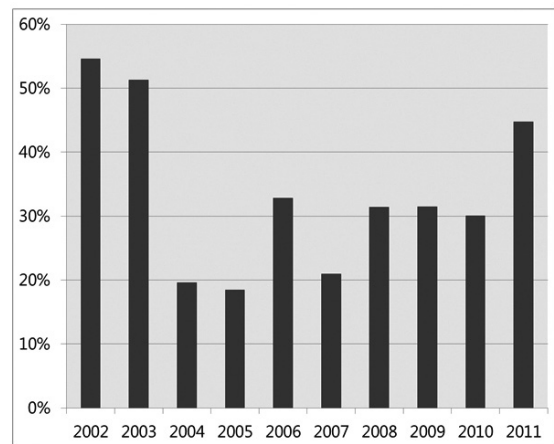


Fig. 7. Annual trend – poor safety protection

전한 자세동작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근로자의 의식은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안전시설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관리자나 사업주의 의식은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 안전시설을 부실하게 설치되어 재해가 줄어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근로자의 안전 의식 부족이나 근로자의 과실보다는 관리적 요인과 시설적 요인에 더 관련이 있으며, 근로자의 교육보다는 안전시설의 설치와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확보가 사고발생에 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 3. 소득수준과 산업재해의 비교

#### 3.1 소득수준과 산재사망지수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는 \$31,753로 185개국 중 27위이며 선진 34개국 중 22위이다.<sup>2)</sup> 이는 EU 평균 \$31,673과 유사한 수준으로 영국(\$35,974)이나 일본(\$34,362)과도 큰 차이가 없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이와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기대수준도 함께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업안전에 대한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Fig. 8은 소득수준과 산재사망률을 비교한 그래프로서 구매력기준 일인당 GDP와 산재사망률을 겹쳐서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는 2011년 기준으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를 앞서고 있지만(IMF 2009), 산재사망률은 조사대상 국가 중 압도적으로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 국가 중 산재사망률 막대가 소득막대보다 길게 나타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둘 뿐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소득이 멕시코의 두 배가 넘는데도 산재사망률까지도 멕시코의 두 배가 넘고 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 3.2 소득반영 산재사망기대지수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으면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안전에 대한 요구도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산업안전수준은 소득과 연계해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소득이 낮으면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도 소극적이어서 산재사망률이 증가할 나타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득과 산업재해가 반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설정할 수 있다.

$$\text{산재사망률} = \alpha \times \frac{1}{\text{소득수준}}$$

위에 식에서  $\alpha = \text{산재사망률} \times \text{소득수준}$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를 소득반영 산재사망지수로 하고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9와 같다.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해 산재사망이 현저하게 높은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소득반영 산재사망지수를 100으로 놓았을 때 영국은 3.8에 불과하며, 2위인 캐나다조차 우리의 1/3 수준인 35.8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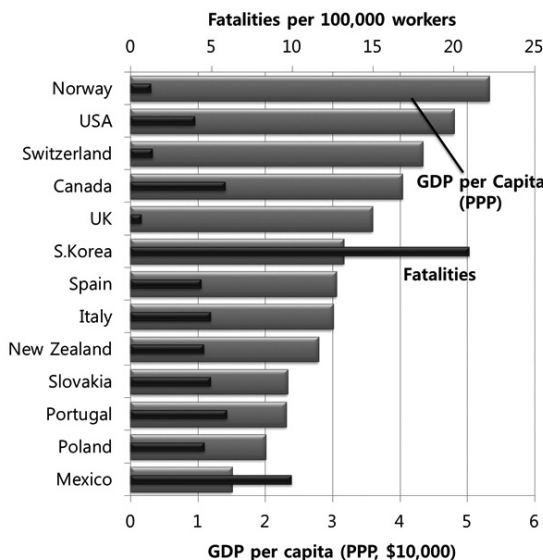


Fig. 8. Income level and industrial fata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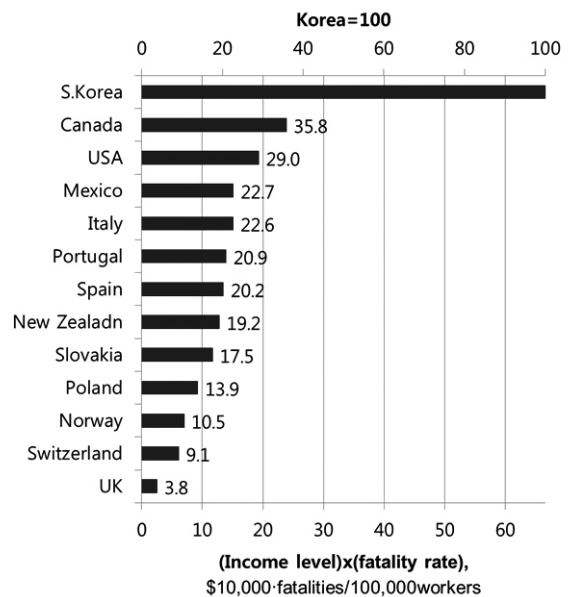


Fig. 9. Income level multiplied by fatality rate

2)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1/02/weodata/weoselagr.aspx>



## 4. 국내외 산재예방대책의 비교분석 및 대책

### 4.1 우리나라의 건설업 산재사망 및 법집행

#### 4.1.1 건설부문 산재사망 추세

지난 10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건설업분야에서 매년 600인~800인 사이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며 그 건수는 Fig. 10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볼 때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보듯이 주로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의 근로자 안전의식 강화 중심의 산재예방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망만인율은 줄고 있는 하나 재해를 산정시 분모로 사용되는 상시근로자수가 정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만인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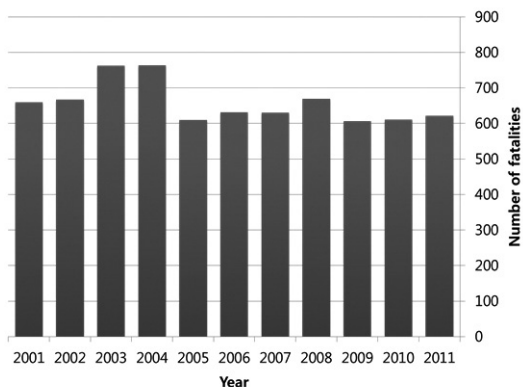


Fig. 10. Annual trends in worker fatalities in construction sites (Korea)

#### 4.1.2 우리나라의 법집행 현황

우리나라의 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Fig.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연 4000건에서 8000건 중 3000건에서 7000건 가량의 기소가 있었다. 그러나 그 중 실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2007년의 예로 보면 구속사례는 3건에 불과하며, 구속과 불구속을 합쳐도 96건에 불과하여 법집행수준이 영국과 비교할 때 매우 정미함을 알 수 있다.

처벌건수가 중대재해발생건수를 초과하는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재해발생건수에도 훨씬 못미치는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망재해의 경우에도 극히 일부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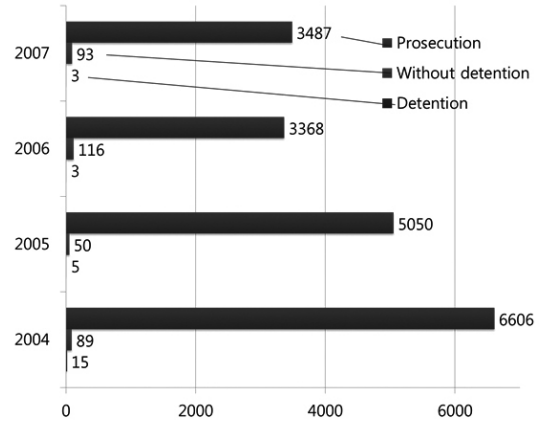


Fig. 11. Enforcement cases of industrial accident (Korea)

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조항<sup>3)</sup>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Fig. 10과 같이 매년 사망재해가 감소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ig. 11에서 보듯이 기소건수는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4.2 영국의 사례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심각하게 높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영국과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영국은 건설업에서 매년 50~80명 가량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1/10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볼 때 Fig. 12에서 보듯이 06/07년과 07/08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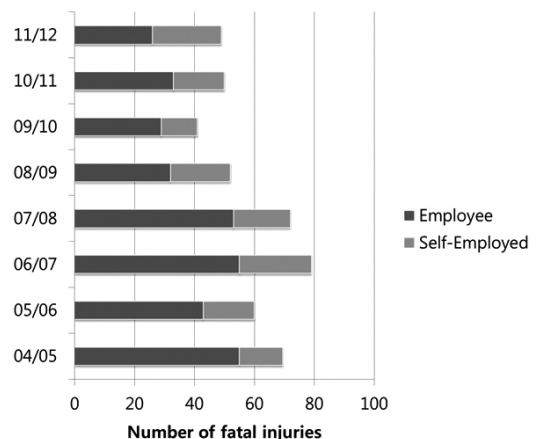


Fig. 12. Annual trend in worker fatalities in construction sites (UK)

3)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http://www.hse.gov.uk/statistics/>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업 분야에서도 점차 중대재해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90/91년에는 120명, 00/01년에는 100명 이상이던 중대재해건수가 11/12년에는 50명 정도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사이에 건설업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4.3 법집행의 비교

영국의 법 집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영국 HSE에서 발표된 2011/12년도 Annual Statistics Report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Fig.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지난 10년간 매년 1,100건~1,400건 사이의 개선명령 처분이 있었으며 매년 500~700건 가량의 유죄확정사태가 있다. 영국에서의 중대재해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Fig. 12), 법 집행 사례는 늘고 있으며, 중대재해건수에 비해서도 처벌 건수가 더 많다. 이는 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산업재해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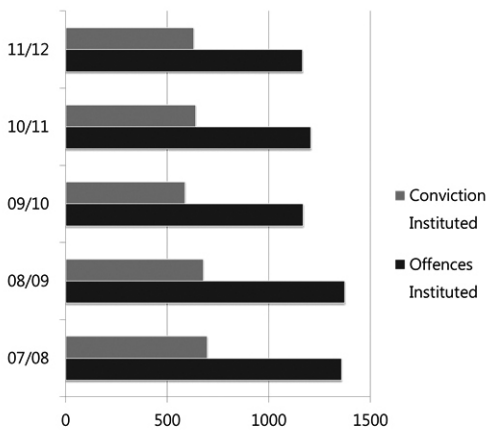


Fig. 13. Enforcement instituted by HSE (UK)

건설업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연간 Fig. 14에서 보듯이 약 200건(위반 행위 건수는 연간 약 400여건)에 대해 건당 평균 20,000파운드(약 37,000,000원)의 벌금(penalty)이 부과 되었다. 건설업에서의 중대재해가 감소되고 있는 것에 반해 기소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법집행이 증가하면 재해는 감소한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외에도 영국에서는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 제정되어,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사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산재사고의 원인을 근로자의 과실에 두기보다는 사업주 책임의 강조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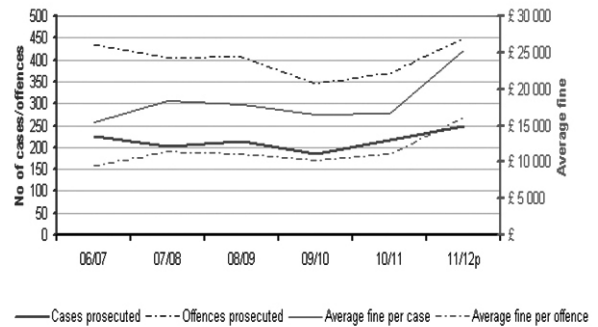


Fig. 14. Prosecutions in construction (UK)

### 4.4 산업안전 정책의 비교

우리나라와 영국의 산업안전 정책의 방향을 비교해보기 위해 HSE 웹사이트(hse.gov.uk)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웹사이트(kosha.or.kr)에서 “조심”과 “단속”을 검색어로 하여 그 검색건수를 비교하여보았다. Fig. 15와 Fig. 16을 비교해보면 공단 사이트에서는 조심과 관련된 단어의 검색건수가 단속과 관련된 단어의 검색건수보다 높은 반면 영국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건설현장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적용<sup>5)</sup>에서 보듯이 교육을 통해 근로자를 조심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영국은 조심보다는 법집행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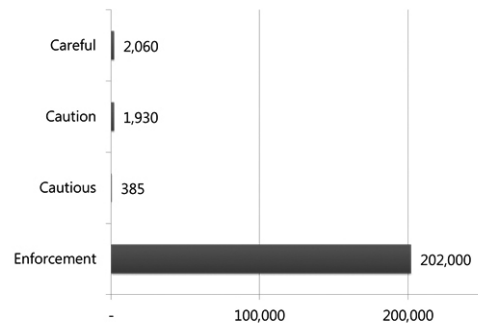


Fig. 15. Number of search cases (H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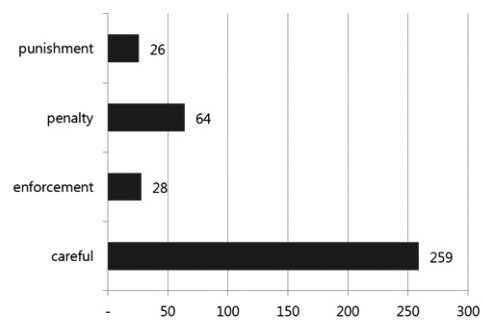


Fig. 16. Number of search cases (Kosha)

5)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2조의3

우리나라에서는 단속과 처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산업재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은 영국조차도 단속과 처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산재 감소를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주의 속성상 법집행이 없다면 이윤을 위해 안전을 희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속과 처벌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산재사망이 줄지 않은 반면, 영국의 중대재해가 줄고 있음은 단속과 처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4.5 분석 및 대책

우리나라에서의 건설업의 사망재해는 그동안의 추세를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법집행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산재사망률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앞으로 감소할 가능성마저 희박하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며 그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법집행을 정상화하여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영국과 비교해 볼 때, 매년 중대재해가 감소하는 영국에서는 법집행건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집행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처벌건수가 사고발생건수를 상회하여 법집행이 사고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처벌건수가 사망재해건수보다도 현저히 적었다. 이는 예방을 위한 법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법집행을 우선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집행보다는 교육을 강조하여 근로자가 스스로가 조심하여 위험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조심조심과 같은 구호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사고의 원인을 근로자의 부주의로 돌리는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로자는 산업재해의 피해자인데,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접근법이다. 즉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정책의 방향은 잠재적 기인물이나 위험요소의 제거보다는 잠재적 피해자에게 조심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조심을 강조하는 산업재해예방정책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잘못된 정책방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심조심”과 같은 구호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사고발생에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우리의 문화적 성향이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산재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근로자가 조심하지 않거나 작업을 “빨리빨리”해서 그렇다는 통계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

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영국의 81.1%이며, OECD평균 대비 79.9%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산업통상자원부 2013), 우리나라 근로자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결코 작업을 “빨리빨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의 불안정한 자세나 동작이 사고의 원인인 경우는 매우 미약하며 이마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적 자료는 근로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조심조심”과 같은 구호는 산재예방에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을 강조하기 보다는 철저한 안전시설 설치와 같은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사고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과 관련된 규정준수를 중심으로 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건설업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산재통계를 중심으로 소득과 산업재해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률이 매우 높다. 이는 사회적 측면에서 야기되는 문제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영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원인을 도출하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지난 10년간의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자세나 동작에 의한 재해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불안정한 상태 방치나 안전방호장치 결함에 의한 재해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근로자의 의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안전시설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산재예방정책은 주로 근로자의 조심을 강조하는 근로자교육이 우선시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조심조심”을 강조하는 구호는 사고예방을 근로자를 조심시키는 것에서 찾으려는 잘못된 접근방법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실효성있는 산재저감을 위해서는 근로자 안전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시설과 같은 작업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한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만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와 영국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조심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영국은 사업주에게 법집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건수가 우리의 1/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영국과 같은 산업안전 선진국의 경우

조차도 연간 20000건에 가까운 개선명령과 700여건에 달하는 유죄판결을 내린다는 사례를 볼 때 우리의 산재예방 정책은 너무도 미온적이며 현 상황의 해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작정 법집행을 강화한다고 산업재해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에 대한 벌칙이 가해져야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보다 재해가 적은 영국보다도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은 것이 문제점이다. OECD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행되어온 미온적 대책은 향후에도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며 법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 피해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잠재적 가해자와 위험요소를 단속하고 법집행을 제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수준은 소득수준과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다른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과 함께 지난 10여년간 건설현장을 비롯한 모든 산업현장에서의 산재사망건수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정책방향을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References

- Chua, D. K. H. and Goh, Y. M. (2005). "Poisson Model of Construction Incident Occurrence,"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ASCE, 131(6), pp. 715-722.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11/2012). *Construction - Work related injuries and ill health*, p. 12. <<http://www.hse.gov.uk/statistics/>> (2013.07.11)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11/2012).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nnual Statistics Report*, pp. 10-12.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1/02/weodata/weoselagr.aspx>> (2013.07.11)
-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02 ~ 2011),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http://www.kosha.or.kr/board.do?menuId=554>> (2013.07.11)
- Oh, S. C. (2011). 'Analysis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labor productivit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p. 5.
- Cho, H. H. (2009). *A study on criminal punishment system and penalty case of foreign country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search Institute, p. iv.
- Kim, S. K. (2009). *A comparative study on occupational accidents and socio-economic index variations of OECD countrie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search Institute, p. 151.
- Park, C. S., Son, C. B. and Hong, S. H. (2000). "An Improvement Strategy of Construction Safety Performance Considering Safety Level of Construction Firm,"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2), pp. 81-88.
- Sin, D. P. and Lee, D. E. (2013). "The structural analysis between safety factors having an effect on the construction workers' behavior,"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4(1), pp. 101-114.
- Yi, K. J. and Langford, D. (2006), "Scheduling-Based Risk Estimation and Safety Planning,"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ASCE, 132(6), pp. 626-636.

**요약** : 소득수준이 높으면 이와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기대수준도 함께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업안전에 대한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은 그동안 많이 향상되었으나, 산재사망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산재사망이 지난 10여년간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률을 관련 국가들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근로자 중심의 산재예방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소득반영 산재사망지수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국가 중 그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법집행실적에 대한 비교를 한 결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법집행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건설공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법집행 강화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건설안전, 산재사망률, 산재예방대책